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3.08]

1. 2022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결과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8.29자로 2022년도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지도결과 및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을 소개함
- 2022년도에 일본으로 수입된 수입식품의 전체 신고 건수는 약240만건, 수입중량은 약3,192만톤으로, 신고된 건수중 202,671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781건이 식품위반사례로 적발되어 수출국으로 되돌려지거나 폐기처분등의 조치를 당함
- 검역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검사는 100,947건을 실시하였으며, 158건이 위생위반으로 판정되어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함

2. 식품위반 통계

- 수입신고된 2,400,309건에 대해 수입자 자체검사 및 행정검사등을 포함하여 총202,671건에 대해 시험검사를 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건수 대비 8.4%의 검사율로 평년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식품류의 일본 수입건수는 100,296건이었으며, 그 중 8,018건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7건의 위반이 발생함.
 - 전세계 수입건수 대비 검사율은 8.4%, 한국산 식품류의 검사율은 7.9% 수준이었으며,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9.5%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검사결과 전체 평균 위반율은 0.39%인 반면 한국산 식품의 위반율은 0.46%로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산 식품류의 경우 위반율은 0.23%로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한국산 대일수출 식품류의 위반경향을 보면 대장균군 양성 등 위생위

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생관리 개선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34801.html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일본 통관 간소화 선행샘플 검사 제도 소개

1) 선행샘플 검사제도 개요

- 본선 컨테이너 화물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전에 소량의 검사용 샘플을 수출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송부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함
- 선행샘플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소에 식품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식품 등으로 실시한 검사」라고 불리워지고 있음
- 선행샘플 검사시 제품은 해외 제조자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등록검사기관에 직접 송부된 미개봉(세관등 행정기관 검사에 의한 개봉 제외) 상태의 샘플이어야 함
- 선행샘플 검사비용은 일본 현지 수입업체가 검사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2) 선행샘플 검사 활용 수입신고

- 선행샘플을 활용한 검사성적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품목등록제도>를 위한 목적 이외는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2015년 4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식품 등으로 실시한 검사결과 확인서」 사무규정에 의거 샘플 확인서와 시험성적서가 첨부될 경우 단발성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대량의 컨테이너 수출전에 샘플검사를 통한 통관 원활화가 가능해짐
- 선행샘플 송부시에는 EMS, DHL 등의 국제택배업체를 사용하여 송부 가능하며, 택배전표도 검사기관에서 검역소에 제출 대상 서류중의

하나임으로 전표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명의 및 주소가 수출신고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3) 선행샘플 검사제도 장단점

- 컨테이너로 대량의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판단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로 판정되지 않음.

☞ 위반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신뢰도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음

- 실제 본선 컨테이너 수입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사전에 검사결과 통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수입이 안되는 사례 방지
- 선행샘플 제도 이용이 불가한 품목으로는 일본 검역소가 지정한 검사 명령품목, 미생물관련항목(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아플라톡신 등), 매수입시 마다 검사하도록 지정된 항목(시안화합물, 유전자조작, 방사성물질 등)이 있을 경우 불가함
- 수입제품의 성분 및 가공정도에 따라서는 별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검역소에 검사필요 유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오사카검역소 식품감시과 자료

<https://www.forth.go.jp/keneki/osaka/syokuhin-kanshi/hinmokutourokuyouseihouhou.html>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8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47건이 발생함 (식기류 제외)
- 8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익힌 붕장어에서 대장균군 양성, 고추

참치 파우치에서 발육가능한 미생물 양성으로 인한 위생 위반 2건이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 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분부적합의 위반 20건(42.6%), 아플라톡신 위반 6건(12.8%), 위생위반 18건(38.3%), 기타 3건(6.4%)으로 위생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8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21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 중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44.7%를 차지함
- 피넛버터와 빌베리 추출물에서 지정 외 첨가물 검출, 효소처리 스테비아의 함량 부적합, L-글루타민 성분부적합, 소바와 신선양파,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 성분부적합 위반 9건, 표고버섯전과 냉동의 가리비회, 바지락살, 냉동 손질(컷트) 오징어에서 대장균군 양성, 멍쌀에서 곰팡이 발생, 미니 카레 고로케에서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8건, 볶은땅콩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3건, 월계수잎에서 제조, 가공 및 조리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위반 1건 등 계 21건의 위반이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빨간 양파와, 카피르 라임 잎, 신선 두리안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성분부적합 위반 4건, 냉동 새우류에서 세균수 초과, 옥수수 낱알에서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위생위반 2건 등 계 6건의 위반이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옥수수와 신선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멍쌀에서 곰팡이 등으로 인한 위생 위반 2건 등 계 4건의 위반이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성분부적합	아플라톡신	위생	기타
중국	21	44.7	9	3	8	1
태국	6	12.8	4		2	
미국	4	8.5		2	2	
기타	16	34.0	7	1	6	2
합 계	47	100.0	20	6	18	3
	비율(%)		42.6	12.8	38.3	6.4